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·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3 신설).
-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의4 신설).
-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4조의2 신설).
-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, 공유재산 관리·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(안 제10조의2, 제14조, 제40조 및 제98조).

II. 검토의견

1. 위임 규정 마련(안 제18조의4제1항)

개정안 제18조의4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지원,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, 청문 및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를 두고 있음.¹⁾

개정안 제18조의4제1항은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‘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’으로만 규정할 뿐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이를 정할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, 전문기관의 업무가 법률상 공유재산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업무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
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은 지정기관에 일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, 지정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 및 업무수행 방식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.²⁾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⑤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법제처, 「법령 입안 심사 기준」, 2024, pp.168-170

따라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유사 입법례인 「지방회계법」 제13조제1항을 참고하여,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‘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’로 구체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및 비용 지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마련함.³⁾

[안 제18조의4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개정안과 같음)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

3) 「지방회계법」 제13조(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